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Library Law in Korea

한 성 택(Sung-Taek Han)*

〈목 차〉

- | | |
|--|---|
| <p>I. 서 론</p> <p>1. 연구의 목적</p> <p>2. 연구의 방법</p> <p>II. 도서관법</p> <p>1. 도서관법 제정 경위</p> <p>2. 도서관법의 주요골자</p> <p>III. 도서관법의 개정</p> <p>1. 도서관법 개정 경위</p> <p>2. 개정도서관법의 개정방향</p> <p>3. 개정도서관법의 주요골자</p> <p>4. 도서관법 시행령 전면 개정</p> | <p>IV. 도서관진흥법</p> <p>1. 도서관진흥법 제정 배경</p> <p>2. 도서관진흥법 제정 경위</p> <p>3. 도서관진흥법 주요골자</p> <p>V.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p> <p>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배경</p> <p>2.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제정경위</p> <p>3.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주요골자</p> <p>4.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일부개정</p> <p>VI. 결 론</p> |
|--|---|

초 록

1963년 10월 28일 최초로 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 1424호)과 1987년도 「개정도서관법」, 1991년도 「도서관진흥법」, 1994년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동 시행령 등에 대하여 각각 그 제정 또는 개정 과정과 배경, 주요골자를 상세히 설명하고 제정 내지 개정 과정에서 문제되었던 내용들을 다루었으며, 선·후 법률간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검토하여 문제점 및 개선 내용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 explained about the process of enactment, revision, background and main prints of Library Law enacted on October 28, 1963 and the subsequent revised or enacted laws,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laws and suggest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early laws and the late laws by compraing, analyzing and examining

* 숭의여자대학 문헌정보과 교수 (hankim@sewc.ac.kr)

• 접수일 : 2002. 11. 27 •최초심사일 : 2002. 11. 28 •최종심사일 : 2002. 12. 10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도서관법은 1963년 10 28일 법률 제 1424호로 제정·공포되었다. 도서관법 제정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55년 4월 16일 한국도서관협회(도협)의 창립총회에서였다. 도서관계는 도협을 중심으로 도서관법이 제정·공포되기 전, 8년에 걸쳐 7차에 걸친 새로운 법 초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20여 차례에 걸친 건의와 진정 등을 하였다.¹⁾

이 법 제정은 도서관 육성에 대한 국가제도의 확립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사실이 되었다.

도서관법이 제정·공포된 후, 1965년 3월 26 일에는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국가도서관 정책수립의 기초가 완성되었다.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과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의 신분 보장 등 주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지적자유를 보장하고 교육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가의 문헌정보관리 정책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은, 당초 입안 과정에서 전국 시·군·구에 공공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등 도서관육성을 국가주도 하에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미온적인 내용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당시 도서관계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법 제정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법일지라도 법 제정 자체가 도서관육성책을 강구하는 시초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 법 제정 자체를 환영하였다.²⁾

그 이후, 이 법이 법제정 24년만인 1987년 모처럼 개정되었고, 1991년도에는 도서관진흥법으로, 1994년도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새로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법제정과정은, 우리나라 도서관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변천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상세히 비교·분석·검토함으로써 향후 도서관 관련법의 전향적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법 제정과 관련된 시대적 배경 글고 관련 기관 및 법제정 실무 작업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당시 증언기록과 문교부(교육인적자원부) 및 국회 입법과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1) 이종문, 도서관 발전의 당면과제-도서관법을 중심으로-, 《출판문화》 1, 1965, 3.4, pp.11.

2)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법개정안,” 《도협월보》 20, 1979, 12, p.8.

근거로 최초의 도서관법과 개정 도서관법, 도서관 진흥법, 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동법 시행령 등의 주요골자와 각 조항들을 비교·분석·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도출하였다.

II. 도서관법

1. 도서관법 제정 경위

1953년 6. 25 사변이 휴전협정으로 종결된 후 전쟁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던 시기인 1955년 4월 16일 도협은 창립총회를 열고, 가장 핵심적인 추진 사업으로 도서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서관법 제정에 대한 대 정부건의를 즉각 처리하기로 결정한 동시에 4월 1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엄대섭, 박희영 두 회원에게 도서관법 초안작성을 위임하였다.³⁾ 5월 1일에는 도서관법 제1차 초안의 검토를 거쳐 확정되었는데 4장 13조로 된 간단한 내용이었다.

1956년 도협은, 8개 분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1956년 5월 8일 8명으로 이루어진 도서관법 제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아직도 도서관법이 없음으로써 전국도서관 발전에 큰 지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법안 기초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에서 위원회가 운영되었다.⁴⁾

그 해 11월 도서관법제정위원회는 제2차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이때 기초된 초안은 6장 35조로 몇 가지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된 초안이기도 하였다.⁵⁾ 즉 공공 도서관 입관료 문제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관계 문제가 도서관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줄곧 논의의 쟁점이 되었다.

11월 20일 당시 국회의 민장식 위원이 전문 6장 36조로 된 도서관법안(도협의 초안을 기초로 하였으나 일부 변경된 것임)을 정식으로 국회에 제안하였으나 1958년 12월 국회의 2.5 정치 파동으로 말미암아 국회에 상정까지는 되었으나 토의되지 못한 채 절차상 일단 폐기되고 말았다.

민장식 위원의 도서관법 국회 상정은 하나의 도서관법 제정 과정에서의 획기적인 조치로서 도서관법 제정 과정의 큰 발전을 보여 준 것이었다.

한편 6월 20일 한국일보사 주최로 도서관법에 대한 좌담회가 개최되었는데⁶⁾ 이 좌담회

3)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30년사, p.110.

4) 한국도서관협회, “분과위원회 활동,” 《도협월보》, 1957, p.8.

5) 한국도서관협회, “공개토의(전국도서관대회에서의),” 《도협월보》 3, 1962, 7.8, p.105.

6) “도서관법을 말하는 좌담회,” 한국일보, 1959, 6, 5. 제4면.

는 사회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월 9일 도협 이사회에서는 도서관법제정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10월 23일 도서관법 제정에 대하여 국회 각 민의원에게 서면으로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였다.⁷⁾

이와 같은 도서관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1960년도에도 계속되어 법 초안을 입법 자료로 제출하고 여러 번 건의하였다.

1961년은 정치적으로 5.16군사 정부가 혁명주체 세력을 중심으로 국가재건 최고 회의를 조직하여 2년 6개월 간 과도 정치 체제의 군정을 실시하기 시작한 해였다. 국가재건 회의의 내에는, 법제 사법, 내무, 외무국방, 재정경제, 문교사회 교통체신 운영기획 등 7개 분과 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들의 분과위원장들은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⁸⁾ 이 군사 정부는 혁명공약에 따라 산업화 우선정책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하였다.

그 당시 도서관법은, 당시 모든 법 제정과정의 절차에 따라 처음에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 즉 문교부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법제처로 넘어가고 법제처에서 차관회의, 장관회의에서 최고회의 문교사회위원회를 거쳐 최고회의 상임위원회로 넘겨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 공포되는 절차를 거쳤다.

7월 9일 도서관법은, 법제처에서 차관회의까지 상정되었으나 차관회의에서는, 그 내용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검토한 후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폐기되고 말았다.

1963년 4월 도협은, 도서관법안을 국가재건 최고 회의에 재 상정하였는데 이 시기는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총선에 의해 민정 복귀를 선언한 무렵이었으며 한편으로는 도협 측과 문교부 관계자들의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될 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그 해 8월 12일 도서관법안이 차관 회의에 상정 8월 29일 전문 29 조로 된 도서관법안이 가결 통과되었다. 그 후 9월 3일 최고 회의에 상정되어 10월 5일 국가재건 최고 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서관법은, 도협이 이 법 제정을 추진한 이래 8년 만에 완결되어 1963년 10월 28일 법률 제1,424호로 공포된 것이다.

2. 도서관법의 주요골자

도협은, 도서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가 수차례에 걸쳐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에 대하여 도협 내에서는 물론 정부의 관계자들과 많은 토의 및 의견 교환이 있었다. 당시 도협에서 도서관법 제정을 추진한 실질적인 주요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도서

7) 임대섭, “도협 5년의 발자취(하),” 《도협월보》 1, 1960, 5, p.24.

8)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 서울 : 동위위원회, 1988, p.91.

관이 국민교육과 민족문화 향상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많은 도서관을 설립하자는 것이었고, 둘째 기설치 도서관과 신설도서관의 운영과 육성을 위하여 법적 근거와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다. 셋째, 사서와 사서교사들의 자격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었다.⁹⁾

이와 같은 도서관관계의 의도는 전문 29조로 된 도서관법 가운데 제6조, (사서직원의 배치), 제7조(국가 등에 대한 공공도서관 설치의 권장), 제8조(도서관의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서직원의 배치, 국가 등에 의한 공공도서관 설치의 권장 그리고 사용료의 조항들은 도협의 도서관법에 요구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도협이 제출했던 도서관 법 초안에는 공공도서관의 입관을 무료로 한다고 기술하였으나 입관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입관료 문제는 도협 측과 문교부 법무관이 여러 번 대립한 내용 이었다. 최고 회의에 상정되어서는 양측의 절충안으로 “입관료는 받을 수 없다. 다만, 받을 수 있는 경우 문교부장관의 사전 별도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조문을 바꾸게 되었으나 다음날 제심의 과정에서 다시 삭제되고 원안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문교부관계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극히 미약하여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보조는 불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자치단체가 스스로 운영되고 국가에서 더 보조한다면 입관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법은 적어도 현실성 있는 조항을 만들어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¹⁰⁾ 이에 도협 측은 지방자치의 조례에 따라 입관료를 받을 수 있고 또 현재 받고 있지 않는 도서관에서는 계속해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생각한 한편 도서관관계는 앞으로 이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의 설치 문제는, “예산의 법이 내에서 공공도서관의 설치,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도협이 주장하였던 설치 의무규정이 아닌 권장 규정에 머물고 말았다. 기 조항은 의무규정으로 회의에 상정되었다가 폐기된 일도 있는데 문교부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의무규정화 하면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며 국가의 실정으로 이것은 실현 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었다.¹¹⁾ 이에 도협은 앞으로 도서관법이 개정 될 때 의무규정으로 개정 될 것으로 기대하며 넘어갔다.

사서직에 관한 제6조 사서직원의 배치조항에는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에 도서관 자료 및 운영에 관한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26조 직원조항에 보면 학교도서관의 직무를 담당할 직원으로서 실업고등전문학교, 초급대학, 대학(교), 교육대학 사범대학교에는 사서직원을 두어야하며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에는 각각 사서

9) 상계서, p.107.

10) 상계서, pp.17-19.

11) 상계서, pp.19-20.

교사 또는 사서직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되었다. 원래 이 문제가 최고회의 문교사회 위원회의에서 심의되었을 때 많은 시간이 걸려 이 관계 조항에 관한 토의가 계속되었고 거기서 “사서교사를 담당할 교사”라는 문구가 첨가되었다. 사서교사와 사서교사를 담당할 교사에 대해 문교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민학교의 경우 학급담당 교수 외에 사서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T.O가 없다. 따라서 처음에 학급 담당 교사 중 어느 교사를 지정하여 사서직을 병행시키자는 것이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T.O 상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이다.”이에 도협도 현실정에서 전문사서교사를 두는 것이 희망이나 겸임으로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서자격자로 도서관학 교육을 받은 즉 사서직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가 200명도 못되어 전국에 배치하기에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조항을 수용하였다.

도서관법이 제정된 후 도협은 당초 기대했던 중요 조항에 만족하지는 못했으나 도서관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 도서관의 육성발전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도서관이 사회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는 규정을 통해 도서관의 개념을 분명히 하였다는 평가를 하였다.¹²⁾ 그러나 1950년 4월 30일 제정 공포된 일본의 도서관법¹³⁾ 공립도서관의 설치에 대해 그 도서관을 설치하는 지방 공공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제10조)라고 하였으며 공립도서관의 입관료 내지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징수를 못하게 규정하였다(제17조) 또한 이 법은 공립도서관의 전문직원의 배치 및 관장의 자격을 사서로 정하고 있어(제13조) 우리나라의 도서관법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도서관법을 제정하기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던 도협의 이종문 전 사무국장은 “도서관법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부처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계자 모두가 법안을 이해하고 필요성을 공감하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서관인들이 도서관 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 노력한다면 향상될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였다.¹⁴⁾ 물론 도협으로서 도서관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그간의 상당한 노력의 결과이고 그 만큼 값진 보람으로 평가된다.

12)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법 좌담 회의록,” p.26.

13) 裏田武夫 小川剛 圖書館法成立史資料,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68, pp.348-354.

14) 상계서, p.16.

Ⅲ. 도서관법의 개정

1. 도서관법 개정 경위

1968년은 도서관법 제정 이후 그 시행성과에 대한 반성이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한 해이다.¹⁵⁾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 지역에서 개최된 전국 관종별 도서관대회에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의 관계자들이 현행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제 발표를 하였고, 도협도 1969년 6월 27일 행정분과위원회에서 도서관법 개정과 관련된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연구하기로 결정하였다.¹⁶⁾ 그 당시 도서관계에서 제기하였던 도서관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요약하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① 국가 등에 공공도서관의 설치 권장조항(제7조)과 공립의 공공도서관의 설치(제8조) 조항은 공공도서관의 설치·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으로서 의무적으로 설치·육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공공도서관의 시설기준은 각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제5조 3항) 그 시설 기준에 따라 건물평수, 열람실 등을 규정하는 등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형식적인 시설기준은 설정하지 말 것이며 한번 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행되도록 구속력과 감독이 있어야 한다. ③ 공공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보조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으로 보조규정(제19조)을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화해야 한다. ④ 사서직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중 사서직종이 마련되어야 하고 사서자격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⑤ 도서관의 사용료(제8조)는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⑥ 소속 청이 내무부와 문교부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9조1항) 지위감독의 문제, 재정문제 등 공공도서관의 정책과 그 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소속 청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도협은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래 13년만인 1976년 법개정 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개정안을 작성하고 도서관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1978년 정부의 도서관 행정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법개정안 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법개정안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여기에서의 1차 개정안과 회원 등이 제출한 의견 기타 관계기관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외국의 예를 참고하여 1979년 10월 2일 도서관법 제2차 개정안(9장54조)을 작성하여 11월 6일 문교부 및 관계당국에 건의되었다.

1981년 3월 17일 도협의 행정분과 위원회는 도서관법 개정안을 작성하기로 하고 현행 도서관법 개정에 관하여 회원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각 조별로 축조 심의한

15)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30년사, p.171.

16) 한국도서관협회, “(1969) 제1차 행정분과위원회의록,” 《도협월보》 10, 1969, 7.8, p.43.

결과 제 3차 개정안(8장33조)을 작성하였다. 이 개정안은 제1차, 제2차 개정안을 종합·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협은 이 개정안을 문교부에 건의하였고 이에 7월 3일 문교부는 3개 기관(도협,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¹⁷⁾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여 문교부 안을 만들었으나 그 내용에 변화가 없어 도협은 7월 11일 문교부 개정안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고 8월 10일에 도서관법 제4차 개정안(8장40조)을 작성하였다

1982년도에 도협은 문교부 및 총무부와 관계회의를 갖고 도서관법개정에 대한 추진을 진행시켰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활동의 결과를 1986년 대통령 국정연설에 반영되어 도서관법 개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현재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도서관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국민이 책을 읽고 사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¹⁸⁾

이에 1월 29일 손제석 문교부장관이 업무보고를 통해 도서관법개정을 언급함으로써 도서관법 개정에 대한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문교부에는 대학, 학교, 사학기관, 관계부처 등 200여 기관을 대상으로 도서관법 개정자료를 수집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개정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① 현대적 의미의 도서관 개념 정립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설치 의무화 ③ 납본제도의 강화 ④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강화 ⑤ 평생교육자원의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활성화 ⑥ 학교도서관의 역할 ⑦ 행정별치 정비 등이 착안 사항으로 포함되어 관계기관에 문의되었다. 이에 도서관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따른 재분류, 사서직원의 자격·대우 및 양성의 제도화, 도서관 발전위원회 및 도서관행정 전담 부서의 설치와 행정의 일원화 그리고 도서관협력망 구성의 명문화 등 16항목으로 정리될 수 있는 각계 의견들이 접수되었다.

도협은 5월15일 이사회를 열고 법개정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11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전국도서관 대회에서 「정보사회와 도서관법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정부에서 적극성을 띠고 이에 대한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로서 그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발표회¹⁹⁾를 갖기로 하였다.

1987년에 들어와서 도협은 지난 1981년의 제 4차 도서관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1월 15일 도서관법 제 5차 개정안(8장 53조)을 작성하였다. 이 개정안은 도서관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토대로 도서관법 개정안을 작성, 심의하기 위하여 4월 3일 문교부가 위촉하여 구성된 도서관법개정심의위원회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도서관계 인사로서 구성된 13명의 도서관법개정심의위원회의는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4월 24일 심의위원회 개정안(8장 47조)을 확정하였다.

이 개정안은 그 해 10월 30일 국회에서 개정된 도서관법의 주요내용을 이루는 것이 되었

17) 서울대학교가 도서관법을 작성한 것은 국립대학으로서 문교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18) 사회교육제도과, 도서관법개정 관계자료, 1986, 10.

19) 리재철, “(제24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사,» 《도협회보》 27, 1966, 9.10, p.2.

다. 문교부는 그 해 6월 2일 도협이 이 개정안을 기초로 새로운 개정법률안을 작성하였다.

문교부안은 8월 4일 민정당에 제출되었고, 그 후 당정협의(민정당 문공위 1회, 법사위 2회,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과의 협의)와 법제처의 축조심의를 거쳐 민정당의 도서관법 개정법률안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3월 도서관법개정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던 민정당 국책연구소 교육문화분과 위원회의 김현자 위원과 국립중앙도서관장, 국회도서관장 등은 9월 16일 도서관 법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는데 문제의 요점은 기능과 책임이 동일한 두 개의 국가 도서관(국립, 국회)이 있다는 문제점이었다 따라서 국가 대표도서관은 하나이어야 하며 법이 오히려 가중,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관한 한, 기본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현행법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지었다.

당시 민정당의 도서관법개정안은 문교부안과 동일하게 8장 47조로 작성되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달라진 조항을 살펴보면, 제2조의 조항 가운데 “국가대표도서관”의 설명을 삭제하였고 제9조 도서관정보발전위원회를 도서관발전위원회로 그 명칭을 바꾸었으며 제10조에 도서관진흥기금 조항을 신설하였다. 9월 30일 민정당 도서관법 개정안은 국회에 이송되어 10월 5일 국회문공위원회에서 도서관법 개정법률안이 김현자 위원 외 38인의 발의로 제안되었다. 다음은 그 제안 이유이다.

“현행 도서관법은 1963년 10월 28일 제정·공포(법률 제 1424호)된 후 24년이 경과되어 급변하는 현대 정보·산업사회에서 다원화된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도서관의 개념을 현대적 의미로 재정립하고 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여 각기 그 특성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서관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도서관진흥기금의 설치 및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도서관정보협력망의 구성 등 도서관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²⁰⁾

이와 같은 제안서의 내용은 그 동안 작성되었던 도서관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사항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정법률안은 10월 10일 회부되어 10월 28일 제 137차 정기국회 제 9차 문공위원회에 상정되었고 10월 29일 제 10차 문공위에서 심사보고와 수정이 의결되었다. 수정한 내용은 제 10조 도서관진흥기금 재원조성에 제3호를 신설하여 “정관명령”을 “업무의 정지”로, “정관”을 “그 업무의 정지”로 하였다. 또한 부칙에 특수도서관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신설하였다.²¹⁾

이상의 전문 8장47조의 도서관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상정 가결을 거쳐 1987년 10월 30일 본회에 상정되어 가결 통과되었고, 11월28일 법률 제 3972호로 공포되었다

20) 김현자, 도서관법 개정 법률 제안 설명서, 1987, 10.

21) 문교공보위원회, 도서관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987, 10.

2. 도서관법 개정방향

도협이 1986년 11월 6일 전국 도서관대회에서는 “정보사회와 도서관법 개정방향”이란 주제로 법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법개정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이 대회에서 제시된 관종별 개정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다.²²⁾

① 공공도서관과 도서관법 개정방향

첫째, 현행법 제1조에 “도서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교육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일본 도서관법을 그대로 인용한 그 내용과 표현이 너무 형식적이다. 따라서 법이 의례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적용될 행정력의 효율적 전개를 국가의지로서 나타내는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의 목적을 명백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차원의 도서관정책 부서를 설치하고 현재 다원화된 소관 부서를 일원화하여 소관 부서 다원화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셋째, 정책자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즉, 도서관법의 시행에 관하여 장관 또는 부를 자문할 독립된 하나의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협에서 작성한 4아 개정안(1983년)에 「도서관발전위원회 설치」 조항이 있어 바람직한 일이나 후속조치로서 뒤따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이 얼마나 실질적이나에 관건이 달려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공공도서관 봉사의 무료이용이다. 공공도서관 봉사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음반, 필름, 회의자료 등 비 도서자료 대출이나 미납도서 자료예약 등에 요금을 지불토록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도서관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즉 지방단위로 설치된 공공도서관 사이의 상호협력과 상호대차의 제도를 규정해야 한다. 많은 나라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지방정부의 행정단위에 맞추어지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는 오히려 작은 규모의 도서관 난립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및 조정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섯째, 재정보조 및 과세권한을 갖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군고에 따르면, “지방당국은 공공도서관 설치·운영비 마련을 위해 과세권한을 가지며, 중앙정부는 지방 공공도서관에 대한 재정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에 따라 영국, 미국, 북구 여러 나라의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이러한 조항이 매우 강조되어 있다.

일곱 번째, 도서관봉사기준 및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지방공공도서관설치 조례의 성격, 지방단위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등이 하위 법에 규정되어야하며, 공공도서관 기준

22) 한국도서관협회, 전국도서관 대회 주제 발표, 《도협회보》 27, 1986, 9.10과 《도협회보》 28, 1986, 11.12

은 시설·자료·인원 등의 양적인 사항도 중요하지만 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침보다 강한 비중을 두어 제정되어야 한다.

여덟 번째, 기타 개정되어야 할 주요문제로서 ①공공도서관의 설치의 의무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한 현행 도서관법 제 18조의 문제는 법제정 이래 지금까지 호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사항이다. ② 전문직 사서에 관한 규정을 공공도서관운영에 맞도록 강화해야한다는 것으로, 공립의 공공도서관장은 외국의 경우처럼 전문직 사서로 보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사서직급의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② 대학도서관과 도서관법 개정방향

첫째, “도서관발전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개정 내지 확대하여야 한다. 우선 위원회의 명칭을 “정보서비스 및 도서관 발전위원회”로 개정하여 정보사회에 있어서 가장 적절히 정보를 유통공급하고, 서비스하는 기능과 개념, 그리고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도서관의 현대적 기능을 수행할 기구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 2차 개정안 제5조(사서의 자격과 양성)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서의 자격기준이 도협에서 조정하여 1981년 6월 10일에 문교부에 제출하였던 3차 개정안에는 삭제되었다. 또한 이 안에는 사서의 자격기준에 대한 별표의 내용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 5조로 규정하였는데 이를 모범에서 다루고자했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즉, 전문사서, 정사서, 준사서 혹은 정사서 1급, 정사서 2급 및 준사서의 3단계로 자격구분을 하여 전문사서의 자격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세 번째, 전문사서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법 2차 개정안 제30조 제2항과 3차 개정안 제27조에서 모두 전문사서(혹은 1급 정사서)에게 대학의 교수대우를 하는 소위 교수신분(faculty status)을 보장하는 조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2차 개정안에서는 이것이 매우 모호하게 되어 있다. 즉, 2차 개정안 제30조(직원) 제1항에 대학도서관에는 제5조에 규정된 사서와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하며 관장은 1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보한다고 되어있으며, 제2항에는 전항의 직원 중 1급정사서에 대하여는 대학의 교원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고 했고,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 중 직원의 정원과 제2항에 규정된 1급 정사서의 대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구체적이며 논리적인 개정안이 되어 있다. 그에 비하여 3차 개정안에는 제 27조(직원)에 대학도서관에는 교수대우의 전문사서와 사서를 두어야만 한다고 되어 있어 대학도서관에서의 전문사서채용 의무규정과 대우에 따르는 명확한 후속 법규정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2차 개정안의 내용을 살리되 관장의 자격을 최소한 전문사서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하고, 전문사서는 대학교원의 승진절차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여야 될 것이다.

네 번째, 사서직의 전문성의 확보와 국가사회에서의 인정이라는 목표를 적절한 시기에 도서관인들이 획득하지 못한다면, 소위 정보사회라는 지식과 정보가 모든 물질이나 재화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새롭게 다가오는 세 시대의 거대한 조류에서 하찮은 직업군으로 밀려나갈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③ 학교도서관과 도서관법 개정 방향

첫째, 학교도서관의 설치, 운영, 감독청의 문제이다.

초·중·고등학교에 도서관설치조항을 권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 이유는, 현재 거의 모든 학교에 도서관 내지 도서실이 어떤 수준의 형태가 되었건 간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평준화 작업이 시작된지도 꽤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초·중·고등학교의 각 급 학교별의 시설기준도 평준화하여 각 지역, 또는 각 학교의 학생들에게 학습환경의 균등을 도모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두 번째, 학교도서관의 예산 문제이다.

현재 학교도서관 운영재원 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도호국단비에서 얻어 쓰고 있다. 예산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고지서에 현재 수업료, 육성회비, 학생회비 등으로 되어있는 항목에 「학교도서관 운영비」를 학생 1인당 월 300원 정도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이 문제는 1970 년도에 건의한 바 있는데 앞으로 시비나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할 문제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 교육세까지 징수하게 되었어도 시비나 국고에서 보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사서교사와 학교사서의 문제이다.

학교도서관 설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할 경우, 사서교사와 배치규정은 의무규정으로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현재 국민학교와 중학교에는 사서교사의 정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고등학교에만 배정되어 있다. 그것도 교육법 시행령의 교원 배정조항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할 것 없이 사서교사의 배치 규정이 빠져있다.

네 번째, 학교도서관 기준의 문제이다.

모든 법조문이 그러하듯 도서관법이나 시행령 그리고 교육법이나 시행령에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현행 도서관법 제 25조 제 2항에 「학교도서관 시설기준은 각령으로 따로 정한다」라고 하여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2항에 「법 제 25조 제 2항의 학교도서관의 시설기준은 따로 각급학교의 시설기준령에 의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학교시설·설비기준령(개정 1982. 8. 5, 대통령령 제 1087호)의 <별표 3>에 규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기준으로서는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④ 특수도서관과 도서관법 개정 방향

첫째, 특수도서관은 성격과 기능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일된 도서관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질적으로 조직된 기구라 하더라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망을 구성하여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외국의 경우에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국가 차원의 상설위원회에 의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4차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는 도서관 발전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둘째, 특수도서관의 유사성격 관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와 같은 기구의 결성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 도서관법이 강제법이나 촉진법이 아닌 이상 권장정신이 전체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문만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각종기준이나 세부적 규제 사항은 법률의 위임정신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네 번째, 특수도서관의 대부분이 그 모체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설치되고 따라서 고유의 기능과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만인을 위한 도서관”라는 봉사정신과 담세의 주체인 국민의식의 차원에서 따라서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4차 개정안의 제4조와 같이 특수도서관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을 우리들 스스로가 판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3. 개정도서관법의 주요골자

전문 4장 29조의 도서관법이 8장 47조로 개정되어 22개의 조항이 신설되고 4개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도서관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재원확보를 위해 도서관 발전위원회와 도서관진흥기금의 설치는 획기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된 도서관법은, 1963년 도서관법 제정당시 도서관계에서 문제삼았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여 그 내용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즉 공공도서관의 설치의 의무화 규정으로 강화하여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증설과 발전을 도모했으며(제21조), 도서관 입관료와 사용료 개념을 구분하여 특정시설 및 자료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공립의 공공도서관의 입관료에 관하여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하였다(제30조). 또한 사서직원의 조항에는(제7조) 도서관에 사서직원 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한다는 것과 그 자격구분에 대한 규정이 있어 업무수행의 적합성과 사서의 자질 향상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밖에도 문제가 되어 왔던 많은 조항들이 개정되어 어느 정도 실질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서관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서관법 개정을 도협의 행정분과위원회와 이사회 등에서 수정하여 왔을 뿐 그 개정작업을 강력히 추진할 전담부서를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개정안이 제안될 때마다 새로운 조문과 조항이 신설되고 문교부에 제안된 여러 차례의 개정안도 각기 다른 내용이 되었다. 따라서 도서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문교부에서도 개정안의 내용이 빈번히 바뀌므로써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였고, 일관성이 결

여되었다.

한편, 문교부는 도협이 여러 차례 도서관법 개정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드리지 않았고, 도서관 법안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즉, 학교도서관의 경우 국민학교 중학교도서관에 대한 조항을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저학년부서의 도서관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했으며 사서교사의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았고,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의 상급관리직에 사서 자격을 제외시켜(사서직의 상위 직급제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의 신분보장을 회피하는 등 내실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지 못했다.

1987년 개정도서관법은 그 과정에 있어서나 내용면에 있어서 다소 문제를 갖고 있으나 도협을 중심으로 도서관계의 많은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고 도서관 사업의 발전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도 좋을 것이다.

4. 도서관법시행령 전면개정

가. 도서관법시행령 개정 경위

도서관법이 개정(1987)됨으로써 이에 근거한 각종 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작성하는 작업을 도협과 문교부 등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여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그 경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협은 1987년 11월 12일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연구협의회를 구성하고 12명의 위원을 분야별로 나누어 위촉하였다. 이 협의회에서는 6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연구협의회안을 작성하였다. 1차 회의에서,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업무추진 계획서 작성, 개정 연구 협의회에서 중점 토의할 범조항 검토 및 심의,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을 전문분야별로 검토하여 개정령(안)을 작성 제시키로 하고 1988년 1월 26일 6차 회의에서 도서관법시행령 연구협의회(안)를 확정된 후 이를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문교부는 이 안을 받은 후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후 법제처와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한편, 1988년 2월 도서관법시행령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4명의 위원을 분야별로 나누어 위촉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수차례 개정안을 검토하여 1988년 2월 10일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 위원회(안)를 확정하였다. 개정심의회(안)은 도서관법시행령 연구협의회에서 채택한 안을 토대로 문교부가 검토하고 법제처와 실무협의를 거친 후 작성된 문교부(안)를 심의하고자 문교부 주관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발족하고 1988년 2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이다.

이어서 도협은, 2월 27일 입법예고된 도서관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지상공청회를 갖고 공청회안을 확정하였다. 그 후 1988년 8월 16일 각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제

12,056호로 공포·시행되었다. 1989년 3월 25일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이 문교부령 제 570호 전면개정 되었다.

나. 개정 도서관법시행령의 주요골자

(1) 공공도서관의 봉사인구가 2만인 미만인 최소규모 공공도서관의 건물 면적을 165평방미터에서 330평방미터로, 기본장서를 1천 권에서 3천 권으로 하는 등 각종 도서관이 효율적 봉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서관종별 시설 및 자료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제3조 및 별표1)

(2) 공공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종전에는 도서관의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330평방미터 이하인 때에는 3인으로 하되 165평방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인을 증치 하던 것을 앞으로는 봉사대상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봉사대상인구가 1만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을 증치하도록 하는 등 각종 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제4조 및 별표2)

(3) 사서직원의 자격이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정사서 및 준사서에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및 준사서로 구분됨에 따라 그 자격요건을 세분화되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종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경력이 있고 연수 등을 받은 자에게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연수를 받은 자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등 사서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그 경력, 학력 및 연수 과정을 상향조정하였다.(제5조 및 별표3)

(4) 도서관발전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 국회도서관장 등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제 7조)

(5) 도서관진흥기금은 도서관의 설립 시설 및 운영과 도서관 정보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의 보조, 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 단체의 연구활동의 지원 기타 도서관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였다.(제12조)

(6)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에 제공 및 납본해야할 도서, 연속간행물 외의 기타 자료는 지도, 음반, 비디오 자료, 슬라이드 등으로 하였다(제19 조)

(7) 도서관 표준자료 번호는 국제표준도서 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 번호로 구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시 자료분류기호를 부가하여 부여하도록 하였다.(제20조 제1항 및 제3항)

(8)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단위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제22조 제1항)

(9) 도서관협력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협력망 운영위원회를 두어 국립중앙도서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제27조 제1항 내지 제3항)

IV. 도서관 진흥법

1. 도서관진흥법 제정의 배경

가. 도서관 정책 전담부서 신설 문화부로 이관

문화부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989년 11월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협과 전국도서관학과장협의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도서관 출판관련 단체들이 문교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도서관업무의 문화부 이관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잇따라 정부기관에 제출하였다. 도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도서관의 문화부이관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신설되는 문화부내에 출판·도서관국을 설치하여, 앞으로 전개될 정보사회의 중심영역인 도서관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및 행정을 전담토록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단체들의 이 같은 집단적 건의서 제출은 문교부, 문화부, 총무처 등 정부부서 간 미묘한 현안이 되고 있는 도서관업무 관장 문제에 대해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도협은 그 해 7월 「도서관 정책 담당부서에 대한 의견서」를 당시 정부조직개편 작업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행정개혁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의견서에서 도협은 「현재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소관부서가 문교부, 내무부 문공부로 3원화되어 있는 도서관업무의 무질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본회의 회원대상 설문조사 결과 80%가 신설문화부에 도서관행정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도서관학과장협의회에서도 회원 81%의 찬성을 근거로 문화부 이관을 촉구하는 공문을 행개위에 보냈다. 도협을 비롯한 각종 관련 단체들의 주장은 ①우리나라의 황폐한 독서 문화는 도서관정책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으며 ②지금처럼 교육문제 하나만으로도 힘에 벅찬 문교부가 계속 도서관행정을 관장하는 한 도서관 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요지였다. 한편 이와 관련 전국도서관학과학생연합회는 「지금 문교부의 도서관관련 업무는 국장, 과장 한사람 없이 행정주사(6급) 한 명이 관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도서관 정책의 부재와 낙후의 근본요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나. 도서관정책 부서 문화부 이관 주장의 내용

도서관행정업무의 전담부서를 교육부와 문화부 중 어느 쪽에서 담당해야 하느냐하는 문제는 이미 과거에도 여러번 도서관계를 비롯하여 관련분야에서 심각하게 논의된 바 있다. 문교부에서 문화업무를 분리시켜 문공부를 신설할 때(1968년)와 행정개혁위원회의 「도서관행정개선을 위한 조사연구」(1979년) 때에도 이 문제는 거론되었고, 또한 도협에서 마련한 「도서관발전계획(초안)」(1979년)에서도 전담부서는 문공부로 함을 전제로 하

있던 것이다.

정책전담부서를 문화부에 두아야 한다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첫째 문교부의 도서관 사업에 대한 관심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학교교육에 수반되는 다급한 행정 및 재정적 수요(전국적으로 확대될 의무교육 연장 포함)은 현실적으로 도서관정책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게 하기 쉽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도서관업무가 문화부로 이관되면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소속청의 일원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문화부 소관업무는 지방정부에서 내무부 산하 시·도, 시·군의 문화 공보실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내무부소속 공공도서관과 소관부서가 일원화될 수 있다.

논리적 측면에서, 첫째 도서관업무 전담부서는 「출판」, 「저작권」, 「커뮤니케이션」 등의 업무담당부서와 인접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종합적인 문헌정보정책의 수립은 문헌의 생산과 통제의 책임부서인 문화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도서관정책 전담부서는 도서관법 등 국가차원의 문헌정보 및 도서관정책 수립·시행과 공공도서관 행정을 주로 관장하고, 대학·학교·특수도서관은 그 모체기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기 마련이다. 한 예로 대학 부속병원, 대학박물관 등이 대학 부설 기관이라 하여 모든 의료행정과 박물관 행정은 문교부에서만 도서관을 담당할 수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넷째, 오늘날의 공공도서관은 사회교육뿐만 아니라 「정보」, 「문화」, 「여가」 봉사 등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현재와 같이 오로지 학교교육의 범주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다섯째, 외국의 경우에도 도서관 전담부서가 문교부(교육부)쪽에 있는 곳이 있기는 하다. 캐나다, 덴마크, 헝가리 등처럼 문화부 쪽에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는 것이다.

2. 도서관진흥법 제정

가. 도서관 진흥법 제정 경위

정보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도서관정책 전담부서가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부는, 1990년 9월 1일 “공공도서관법안”을 작성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도서관계는 도협을 통하여 입법예고된 공공도서관법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반대이유는, 종전 도서관법의 체제로 법제정을 요구한 것이었다. 즉 문화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정책부서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전제로 “공공도서관법”으로 법체제를 축소 개편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도협은 종합법체제로 하여 종전처럼 도서관정책을 문화부에서 일관성 있게 전담해야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도협, 한국도서관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등에서는 1990년 12월 12일 도서관진흥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건의서를 국회문공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정부는 도협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초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 1990년 12월 8일 국회에 상정하였고, 제 15회 임시국회에서는 제3차 문화공보위원회(91. 2. 4)와 제4차 문화공보위원회(91. 2. 6)의 심의를 거쳐 동일자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어서 국무회의의 의결로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2호로 공포되었다. 따라서 종전의 도서관법은 폐지되었다.

나. 도서관 진흥법의 주요골자

- (1) 도서관의 정의를 공중의 정보제공을 통하여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규정하였다 (제1조 및 제2조)
- (2) 도서관이 문화 시설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 내 각종 문화실과 협력하도록 하였다 (제7조)
- (3)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도서관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요 장·단기 정책과 시책 수립등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문화부장관 소속 하에 도서관 발전 위원회를 설치 하였다 (제9조)
- (4) 정부는 도서관의 설립, 시설 및 자료의 확충, 사서직원의 자질향상 및 연구 등을 위하여 도서관 진흥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0조)
- (5) 국립중앙도서관을 문화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국가대표도서관서의 기능을 확충하였다 (제15조 내지 제17조)
- (6) 원활한 도서유통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조하여 도서 및 연속간행물에 대한 국제표준자료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제18조)
- (7) 도서관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수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도서관 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국·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하되, 사서직의 현원 부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종전과 같이 행정직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6조, 제16조, 제24조 및 부칙 제4조)
- (8)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확충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설립·육성의무를 규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이동도서관 및 대출문고의 설치를 규정하였다(제21조)
- (9)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문화부장관이 이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3조)
- (10)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와 개인이 공공도서관을 자유롭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등록제로 하고,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육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제25조 및 제26조)
- (11) 대학 및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 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국민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은 각각 설치하여 연구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31조 내지 제36조)

(12)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 협력 망을 구성하고 각급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음 (제39조 및 제42조)

(13) 문화부장관은 사립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등록 및 지도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시·도 또는 도서관 협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5조 1항·제26조·제37조 제2항 및 제44조)

V.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제정배경

가. 독서진흥법 제정 추진

1993년은 “책의 해”이었다. 책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체육부와 대한 출판문화 협회 등 정부와 출판계에서는 국민 독서진흥을 위한 운동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출판계가 중심이 되어 “책의 해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에서는 국민독서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진흥법」의 제정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 출판문화협회는 2월 법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출판계에서 작성한 「독서진흥법(안)」의 법 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독서진흥을 위한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 책 읽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독서증진 활동을 활성화 함으로써 평생교육과 독서기회를 확대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²³⁾

이와 같은 취지의 독서진흥법안에 대하여 도서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도협에서는, 현행 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함으로써 국민독서 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는 논리로 도서관 진흥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를 하였다.²⁴⁾

이로써 도서관 진흥법이 독서진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되는 동기가 마련되었다.

나. 도서관 진흥법 개정 추진

도협은, 독서의 해를 맞이하여 출판계가 중심이 되어 구체화된 독서진흥법(안)에 대해

23) 한국도서관협회, “독서진흥법(안)에 대한 도서관계의 견해,” 1993, 8, p.19.

24) 상계서, pp.1-18.

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 대신 국민독서 진흥을 도서관의 본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시하고 그 대안으로 현행 도서관 진흥법을 국민독서 진흥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도협에서 제시한 독서진흥법(안)에 대한 도서관계의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²⁵⁾

① 도서관계에서 생각하는 국민독서진흥을 위한 핵심적 방법은, 공공도서관을 활성화하여 독서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 삼는 한편, 학교도서관을 정상화하여 청소년의 독서교육을 통해 독서습관을 증진시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그동안 이를 끈질기게 추진하여 왔지만, 국가의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독서진흥의 두 중심 축인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상호보조 체제마저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책의 해 조직위원회에서는 공·사립문고를 설립하여 여기에 도서를 공급함으로써 독서진흥을 꾀하고자 “독서진흥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도서관계에서도 인정하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숙고해 볼 때 “독서진흥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도서관 진흥법”과의 중복 및 유사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

둘째 각종 “문고” 활동과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②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도서관계에서는 독서진흥법(안)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도서관 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도서관계의 의견에 따라 도협은 도서관진흥법개정(안)을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²⁶⁾

㉠ 독서진흥을 위한 법 체제를 도서관 진흥법과 독서진흥법의 두 개의 법으로 이원화하지 않고 하나의 법으로 통합시켜 다음의 효과를 기양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관행정과 독서진흥(문고설치·육성) 행정을 일원화한다.

둘째, 도서관과 문고의 운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문고 운영의 지속성과 합리성을 도모한다.

셋째, 유사법의 난립을 방지하여 행정 및 재정적 낭비를 억제한다.

㉡ 책의 해 조직위원회에서 마련한 독서진흥법(안)의 내용을 가급적 도서관진흥법에 전폭 수용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 현행 도서관진흥법의 기본 골격과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

25) 상계서, pp.1-18.

26)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안 제정 일지,” 《도서관문화》 35권 1호, 1994.1. pp.42-43.

2.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제정 경위

독서진흥법 제정 추진에 대한 도서관계의 반대 의견과 그 대한으로 제시한 현행 도서관 진흥법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었고, 한편 출판계에서 주장하는 국민독서진흥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 그 절충 방안으로 도서관 진흥법의 개정대신 이를 폐지하고 한편 독서진흥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의 제정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⁷⁾

“책의 해”를 맞아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993년 1월 국민독서진흥법 제정에 대하여 관련단체(새마을문고 중앙회,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간행물 윤리위원회 등)와의 의견을 통법 조정하였다. 한편 출판은, 3월 5일 추진 기구를 결성하고, 7월 “독서진흥법(안)”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출판계의 활발한 움직임에 대하여 도협에서는 도서관계를 대표하여 새로운 법 제정을 반대하여 7월중에 “독서진흥법(안)”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2차례에 걸쳐 정부 등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10월 4일 관계기관 도협 강인섭 의원 보좌관 책의 해 조직위원회, 문화체육부회의를 개최하고 대안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회의 결과 강인섭 의원은 10월 16일 관련단체장(도협, 국립중앙도서관장, 책의 해 조직위원회)을 초청하여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에서는 대안 법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제정하기를 확정하였다.

그 해 2월 28일 국회·문화체육부 공보위원회에서는 동법(안)을 수정 통과 시켰다. 이어서 3월 3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 통과되고 3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법률 제4746호로 공포되었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으로 도서관진흥법은 폐지되었다.

3.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주요골자

도법은, 의원입법(강인섭 의원 외 20인)으로 발의되어 국회 문화체육공보 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제 166회 임시국회 본 회의(1994. 3. 3)에서 통과되어 법률 제4746호(1994. 3. 24)로 공포되었으며 199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기로 한다.²⁸⁾

먼저 의원입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실),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이외에 도서관의 일반적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27) 상계서, pp.25-33.

28)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안 심사 보고서,” 《도서관문화》 35, 1994, 12, pp.348-354.

규모의 독서시설로서 “문고”를 설치하도록 하였다(제2조 제2항)

② 문고는 그 설립자에 따라 공립문고와 사립문고로 구분하였다(제3조)

③ 도서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를 두도록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을 갖춘 문고에는 상기한 사서직원 등을 두거나 독서지도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제6조)

④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 시설 및 자료의 확충 사서직원의 자질 향상 및 연구, 기타 도서관발전과 독서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토록 하였다(제9조)

⑤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에 도서관 발전 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서관 발전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범국민적인 독서진흥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제10조)

⑥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시설·자료의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법인·단체 및 개인이 기금·도서관 및 문고에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1조)

⑦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 하여금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도서관자료의 특별구매, 정부간행물 및 공공간행물의 우선 공급 등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며,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문고에 대하여는 운영경비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2조)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정부투자 기관 및 관련단체 중에서 도서관이 설립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에 의한 문고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였다.(제39조 제1항)

⑨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읍·면·동 단위의 지역에 공립문고를 설립하도록 하였다.(제39조 제2항)

⑩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주거단지·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도서관이 설립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문고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였음(제39조 제3항)

⑪ 문고는 당해 지역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하도록 하였다.(제40조 제2항)

⑫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다(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⑬ 도서관진흥법은 이를 폐지하도록 하였다.(부칙 제2조)

이에 대하여 전문위원(민용태)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의 절차를 거쳐 일부 수정하여 문화체육 공보위원장의 수정안이 작성되고 이를 본 회의에서 의결하였다.

4.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일부 개정

이 법은 제정 이후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교육부가 교육인적 자원부로, 직할시가 광역시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 등으로 정부조직법 등이 개정되고, 정부 시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관련 조항들이 몇 차례 일부 개정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⁹⁾

① 1995년 12월 29일 개정조항

제5장(학교도서관) 제34조(설치)

② 1997년 12월 13일 개전조항

제8장(도서관 협력망) 제43조(지역대표도서관), 제10장 보칙, 제50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1999년 1월 21일 개정 조항

제1장(총칙), 제2조(정의) 제5항, 제9조(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삭제) 제11조(금전 등의 기부) 기부(삭제) 제14조(도서관 협회 등의 설립) 제11조(금전 등의 기부) 기부(삭제) 제14조(도서관 협회 등의 설립), 제15조(국립중앙도서관), 제23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 제1항 제2항, 제27조(사립 공공도서관의 폐관), 제4장(대학도서관) 제33조(지도·감독) 제5장(학교도서관), 제36조(지도·감독), 제6장(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제38조(준용), 제7장(문고), 제39조(문고의 설립) 제4항 제9장 독서진흥 제4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항 2호, 제10장(보칙) 제53조(과태료) 제1항, 제2항 삭제

④ 2000년 1월 12일 개정 조항

제1장(총칙)제 10조(도서관 및 독서 진흥위원회) 삭제, 제3장 공공도서관, 제26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제1항, 제2항

⑤ 2001년 1월 29일 개정조항

제9장(독서진흥) 제47조(독서교육 등)

이상의 일부개정 내용 중 제9조(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와 제11조(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삭제는, 정부의 각종 기금과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조치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모처럼 도서관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도서관 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의 유일한 기구가 없어짐으로써 도서관 육성발전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언제인가는 반드시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한 당면 과제로 남게 되었다.

VI. 결 론

도서관 육성·발전의 제도적 장치인 도서관법이 오랜 도서관계의 노력 끝에 1963년 10

29) 남산도서관, 도서관 관계 법규집, pp.1-14.

월 23일 제정 공포 되었다. 도서관법의 제정은 도서관 육성에 대한 국가제도의 확립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사실이 되었다. 한편 도서관법이 제정 공포된 후 1965년 3월 26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국가도서관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초가 완성되었다.

그 후 몇 년 간에 걸쳐 도서관계에서는 시대환경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도서관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걸쳐 건의하였다.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 24년만인 1987년 10월 도서관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시대변천과 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법 개정 건의와 촉구 등 끊임없는 도서관계의 결집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값진 결실이었다.

1989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부가 신설됨에 따라서 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업무의 문화부 이관을 공식 제의하게 되었고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도서관 업무의 문화부 이관이 정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도서관법은 폐지되고 도서관 진흥법이 새로 제정된 것이다.

도서관 진흥법 중에서 특히 획기적인 내용은 공공 도서관장직을 과거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사서직”으로 보한다는 것으로서 규정하여 국·공립 공공 도서관장직의 사서직화(단수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1993년은 “책의 해” 이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출판계에서는 국민독서진흥을 위하여 “독서진흥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도서관계에서 그 대안으로서 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하여 출판계에서 추진하는 독서진흥 사업을 추진토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도서관 진흥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져 도서관 진흥법을 폐지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새로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은 도서관진흥법의 법체제와 골격을 유지하되 독서진흥에 관련된 출판계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내용의 법으로서 1994년 3월 4일 법률 제4746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은 그 후 다섯 차례에 (1995년 12월 29일, 1997년 12월 13일, 1999년 12월 21일, 2000년 1월 12일, 2001년 1월 29일)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다. 일부 개정 이유는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직할시가 광역시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는 등 정부조직법 등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었다. 그간 이 법의 일부 개정 내용 중 1999년도에는 제9조(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가 정부의 각종 기금의 통·폐합 내지 규제 조치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2000년도에는 제10조(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가 역시 정부의 각종 위원회의 정리 조치에 따라 삭제되었다. 이는 모처럼 도서관 진흥을 위한 기금 형성과 도서관 육성책의 균형 있는 수립 및 추진을 시도한 의지가 정부의 획일적인 조치에 따라 좌절되고 말았다. 이 문제는 앞으로 도서관계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중의 하나로 남게 되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